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12명
- 의안번호 : 제130호
- 제출일자 : 2018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일

2. 제 안 이 유

-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한 방문객 분포는 서울시민이 42%인 반면, 경기도민 46%, 기타 12%로 서울시민 이외에도 경기도민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의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둥이행복카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다둥이가족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로 한정된 복지카드를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요금의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 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로 한정된 혜택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로 변경하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사유서 참조

5.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복지카드 소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을 정도로 경기도민의 방문이 많은 공원임¹⁾. (서울시민 42%, 경기도민 46%, 기타 12%)

1) 2012년 서울대공원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의 다자녀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1) 법령이 정하는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공원의 입장료(제40조)와 점용료(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요금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에는 입장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이, 제20조에는 대상별 30~50%의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서울대공원이 유일하며, [별표1]에 동물원 입장과 테마가든 입장료를 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발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30명 이상의 단체에게 입장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현행 동물원 입장료: 어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테마가든 입장료: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5백원, 어린이 1천원

2) 조례의 적용 대상

-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 12조), 동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 조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관할을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입안할 것을 권고하는 법제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법규 의견 12-0035 참고)
- 서울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와 경기도민에 한하여 입장료 감면에 대한 적용이 되도록 한 것은 서울대공원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거주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의 본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시정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정 홍보에는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가 통과한 후 적용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첨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첨부 2) 입장료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 공 원 별 | | 사용기준 | 금 액(원) |
|---|------------------------|-------------------------------|---|
| 서 울 대공원 | 동물원 |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 3,000~6,000 2,000~4,000 1,000~2,000 |
| |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 2,000~4,000 1,500~3,000 1,000~2,000 |
| ※(주) ○ 어린이 : <u>6세 이상 12세 이하</u>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 |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 공 원 별 | | 사용기준 | 금 액(원) | 비 고 |
|--|---------------------------|-------------------------------|-------------------------|---|
| 서 울 대공원 | 동물원 |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 5,000 3,000 2,000 | ○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 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
| |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 2,000 1,500 1,000 | |
|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 | | |

첨부 3) 관련부서 의견

-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과천시의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입장료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둥이행복카드를 발행하고 자녀 양육비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원 입장료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은 2자녀 30%, 3자녀이상 50% 할인²⁾을 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시설 50% 감면³⁾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타 지자체 다자녀 가정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대공원 인접 과천과학관은 모든 다자녀 할인카드 소유자에게 25% 할인을 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감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3)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별표2]